

대구지방법원 2024. 4. 3 선고 2023나307107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4. 4. 3 선고 2023나307107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3. 3. 10 선고 2022가단136512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3. 6.

판결선고 2024. 4. 3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. 3. 10. 선고 2022가단136512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7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덕, 판사 박만호, 판사 신안재